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2. 5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1998. 2. 7
다. 상정일자 : 제6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제2차 총무사회위원회(98.2.16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태경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'97. 10. 1자로 지방세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류의 위임·위탁송달 방법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등 법률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동장 또는 통·반장에게 위임·위탁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·위탁송달하는 경우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의2)
-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함
-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령이 97. 10. 1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로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방법을 동장 또는 통.반장에게 위임,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6조의 2규정에 신설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
- 본 조례 제14조 규정은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규정이 97. 8. 20 신설되어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,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(지방세 심의위원회)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(지방세 심위원회의 구성 등) 신설로 구세심의위원회 조항은 폐지되고 지방세법 제70조 과세 전 적부심사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므로 본 조례안을 신설 운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